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2024. 12. 11.(수)

제42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785
----------	-----

2024. 12. 11.(수)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자 : 박경숙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4년 11월 15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11월 15일
라. 상정일자 : 제42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2024년 11월 26일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경숙 의원)

가. 제안이유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그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목적과 용어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안 제5조)
-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안 제6조)

-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과 재정지원 (안 제7조~안 제8조)
-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안 제9조~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

- (필요성) 1인 창조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지원하고 있으나 충청북도의 경우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이 열악한 상황으로 충청북도 차원에서 전문성과 창의성을 가진 1인 창조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보여 짐
 - (타당성) 본 조례는 충청북도 내의 1인 창조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고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재정지원 이외에 근거 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없으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지방자치 법령상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에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법적합성)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 (종합의견) 조례의 제정을 통해 충청북도 내 1인 창조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필요성,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 보여짐
- 향후 관계부서에서는 본 조례를 바탕으로 충청북도 내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785호
의결 연월일	. . . (제 회)

충청북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자	박경숙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11월 15일

충청북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박경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85
----------	-----

발의연월일 : 2024년 11월 15일

발 의 자 박경숙, 김꽃임, 이옥규, 유재목,
: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1. 제안이유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그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목적과 용어 정의 (안 제1조~제2조)
-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안 제5조)
-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안 제6조)
-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과 재정지원 (안 제7조~제8조)
-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안 제9조~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붙임
- 조례안예고 : 2024. 11.
- 협의 :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
- 비용추계 : 붙임

충청북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인 창조기업”이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창조기업의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
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1인 창조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1인 창조기업 관련 통계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을 「충청북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1인 창조기업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사업

2.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사업

3. 1인 창조기업 연구개발(R&D) 등 기술개발 지원사업

4. 1인 창조기업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사업

5. 1인 창조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

6. 1인 창조기업 성공사례 발굴 등 홍보 사업

7.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 법인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 대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기업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5. 2. 3., 2022. 6. 10.>

1.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청년 1인 창조기업”이란 39세 이하인 청년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1인 창조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15조(금융 지원) ① 정부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 3. 22.>

② 정부는 1인 창조기업의 설립 및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2016. 3. 29.>[제목개정 2013. 3. 22.]

제17조(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충청북도 1인 창조기업 육성 조례안 비용추계서(제11조제1항 관련)

1. 사업개요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 1인 창조기업 육성 조례 제7조(지원사업), 제8조(재정지원)의 근거로 필요한 비용 발생

3. 관련조문

- 안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안 제8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경비 : 40,000천원

나. 추계 결과 : 25년~29년까지 총 40,000천원 소요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장 이 혜 란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세 출	8,000	8,000	8,000	8,000	8,000	40,000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8,000	8,000	8,000	8,000	8,000	4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8,000	8,000	8,000	8,000	40,000
	지방세	8,000	8,000	8,000	8,000	4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구·군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